

---

#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

---

2010. 9. 17



# 목 차

1. 정책목표 및 추진 방향 .....	3
2. 사업자 선정 관련 주요사항 .....	3
3. 심사기준 구성 및 배점 .....	4
4. 승인 최저점수 설정 .....	6
5. 납입자본금 .....	6
6. 출연금 .....	7
7. 동일인의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 중복 소유 .....	8
8. 복수의 신청법인에 대한 중복 참여 .....	9
9. 향후 일정 .....	10

## 1

###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

---

#### □ 정책목표

-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
-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
-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
-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

#### □ 추진방향

- 합법·합리적이고 공정·공명한 절차를 통해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역량 있는 사업자 선정

## 2

### 사업자 선정 관련 주요사항

---

#### □ 사업자 선정방식

-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(절대평가)

#### □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군 구분 여부

- 별도의 사업자 군 구분 없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선정

#### □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시기

- 종편·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동시에 선정

### □ 심사사항 구성

- 심사기준의 대분류에 해당하는 심사사항은 방송법 제10조 (심사기준·절차) 제1항을 토대로 5개 사항으로 구성
  - ① 방송의 공적책임·공정성·공익성의 실현가능성
  - ② 방송프로그램의 기획·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
  - ③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
  - ④ 재정 및 기술적 능력
  - ⑤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

### □ 심사항목 구성

- 심사기준의 중분류에 해당하는 심사항목은 19개 항목으로 구성
  - (방송의 공적책임·공정성·공익성의 실현가능성) ① 공적책임·공정성·공익성 실현계획, ② 시청자 권익 실현방안, ③ 신청법인의 적정성, ④ 지역·사회·문화적 기여도
  - (방송프로그램의 기획·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) ① 방송프로그램 기획·편성계획, ②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, ③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력계획

- (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) ① 사업추진계획, ②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, ③ 납입자본금 규모, ④ 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, ⑤ 사업성 분석, ⑥ 경영의 투명성·효율성
- (재정 및 기술적 능력) ① 재정적 능력, ② 자금출자 능력, ③ 기술적 능력
- (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) ① 방송발전 기여계획, ② 콘텐츠산업 육성·지원계획, ③ 출연금

□ **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심사사항별 배점**

-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종합편성 콘텐츠사업 승인 심사기준 배점을 기준으로 하되,
- ‘방송의 공적책임·공정성·공익성 실현가능성’ 및 ‘방송프로그램의 기획·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’을 보다 강조

**【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심사사항 배점(단위 : %)】**

심사사항	배 점
방송의 공적책임·공정성·공익성 실현가능성	25
방송프로그램의 기획·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	25
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	20
재정 및 기술적 능력	20
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	10
합 계	100

□ **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심사사항별 배점**

- ‘방송의 공적책임·공정성·공익성 실현 방안’과 안정적인 방송을 담보할 수 있는 ‘경영계획’ 등 정책목표를 전반적으로 고려

**【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심사사항 배점(단위 : %)】**

심사사항	배 점
방송의 공적책임· 공정성· 공익성 실현가능성	30
방송프로그램의 기획·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	20
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	25
재정 및 기술적 능력	15
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	10
합 계	100

## 4 승인 최저점수 설정

### □ 전체 및 심사사항별 총점

- 전체 총점의 80% 이상, 심사사항별 총점의 70% 이상을 승인 최저점수로 설정하고, 이에 미달하는 경우 심사에서 탈락

### □ 심사항목별 총점

- 특정 심사항목에 대해 승인 최저점수를 60% 이상으로 설정

※ '특정 심사항목'은 「세부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」 의결 시 결정

## 5 납입자본금

### □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납입자본금 규모 및 심사방안

- 최소한 1개년도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로 3,000억원 설정

-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인 3,000억원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심사항목의 승인 최저점수, 5,000억원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배점의 100%를 부여하고,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
- 3,000억원 초과 5,000억원 미만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, 금액 순으로 관련 심사항목의 승인 최저점수와 배점의 100% 사이의 점수를 균등 배분

#### □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납입자본금 규모 및 심사방안

- 최소한 1개년도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로 400억원 설정
-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인 400억원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심사항목의 승인 최저점수, 600억원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배점의 100%를 부여하고,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
- 400억원 초과 600억원 미만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, 금액 순으로 관련 심사항목의 승인 최저점수와 배점의 100% 사이의 점수를 균등 배분

## 6

### 출연금

#### □ 최소 출연금 규모

-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100억원,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는 15억원으로 설정

## □ 심사방안

- 최소 출연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, 해당 심사항목 배점의 100%를 부여, 충족하지 못할 경우 0점 처리

## 7

## 동일인의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 중복 소유

---

### □ 기본원칙

- 동일인(방송법상 특수관계자를 포함)이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을 2개 이상 소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 반영

※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 : 종합편성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또는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운영하는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채널

### □ 기존 사업자의 승인 신청

-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을 소유하고 있는 종합편성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또는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신규 종편·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

- (신청 단계) 승인 신청시, 기존에 운영하던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에 대한 「처분계획」을 제출
- (심사 단계) 신청법인이 제출한 「처분계획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하고,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련 심사 항목을 과락 처리

※ 해당 심사항목은 승인 최저점수가 적용되는 '특정 심사항목'으로 설정



- (승인 단계) 해당 신청법인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, '기존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의 처분'이 완료된 후 승인장 교부

## □ 신규 사업자의 승인 신청

- 동일한 신청법인이 복수의 종편·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

- (신청단계) '두 개 사업 모두 승인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, 사전에 지정한 한 개 사업에 대한 승인 신청을 철회한다'는 내용의 「승인신청 철회계획」을 제출

- (심사단계) 신청법인이 제출한 「철회계획」을 심사하고, 제출하지 않는 경우, 관련 심사항목을 과락 처리

※ 해당 심사항목은 승인 최저점수가 적용되는 '특정 심사항목'으로 설정

- (승인단계) 해당 신청법인이 두 개 사업 모두 승인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, 사전에 지정한 한 개 사업에 대한 승인 신청이 철회된 후 승인장 교부

## 8

### 복수의 신청법인에 대한 중복 참여

- 어느 한 종편·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신청법인에 5% 이상 지분을 참여한 동일인(방송법상 특수관계자를 포함)이 다른 종편·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신청법인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며, 이를 위반하는 구성주주에 대해서는 참여를 배제

※ 5% 미만 중복참여 주주가 있는 신청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방안은 「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」 의결 시 결정

- 「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」 위원회 보고 및 의결(10월 중)
  - 주요 내용 : 「기본계획」에 따른 심사항목 배점, 세부심사항목 구성 및 배점, 평가방법, 승인신청 요령 등
  
- 신청 공고(10월~11월 중) 및 신청 요령 설명회
  - ※ 공고 기간은 1개월 이내로 고려
  
- 「심사계획」 의결(11월~12월 중)
  - 주요내용 : 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, 심사 실무에 관한 사항 등
  
- 심사위원회 운영(12월 중) 종료 직후 선정 결과 의결
  - ※ 세부 일정은 위원회 내부 사정 및 정책 추진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